

'23.7.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제도 안내



'23. 7. 7.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안전망강화TF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재활, 사회 복귀 촉진 등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차례

- 1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및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비교>

구분	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	반드시 충족	폐지
입·이직 신고	신고 필요	(원칙) 폐지
적용제외신청	사유발생 시 신청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제외)	폐지 ※ 휴업신고제도 도입(기준보수 적용 직종 중 부과고지사업에 한정)
보수	기준보수	(원칙) 실보수
보험료율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요율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적용	미적용 → 종사자의 재해와 사업장 요율 무관
하나의 사업 내 장소적 분리 사업장 관리	분리적용	(원칙) 하나의 관리번호로 적용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비교입니다.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적용대상자(노무제공자)

-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①**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②**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현행 산재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의 비전속 노무제공자와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으로 정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알아보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2023. 7. 1.부터 포함되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7호)

- 관광가이드로 통칭되는 여행업 종사자 중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행사와 계약하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돕는 자**

(정의)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 → 고용보험과 동일

- ※ 고용보험과 달리 연령(65세 이상자), **소득(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자)**, 외국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입니다.
연령, 소득, 국적 등 제한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한다면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보험가입자 및 사업장 관리

◆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 여러 사업장에 노무제공 시 각각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 여행사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 사업장 관리 체계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부여**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 등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적용 가능(다음 달 초일부터 분리 적용)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노무제공자 관리번호는 일반근로자 관리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입·이직 신고 제도 폐지
 - 월 보수액 신고(후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일용근로자 관리방식과 유사)

◆ 적용제외신청제도의 폐지

- 부상, 질병, 육아 등의 법정 사유 발생 시 제출하였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제도로 대체**
 - 다만, 휴업신고는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고용부 고시)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 후술)에 한하여만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등 실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종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업신고 불필요**
- ※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직종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

관광통역안내사는 입·이직 신고 제도,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및 월보수액의 산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매월 산정

$$\text{산재보험료} = \text{개인별 월 보수액} \times \text{산재보험료율}$$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 없음

◆ 월 보수액의 산정 ※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전환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text{월보수액} = (\text{사업소득 A} - \text{비과세소득 B}) - \text{경비 C}$$

* **일비 및 쇼핑상품 판매수수료를 포함.** 팁은 증명이 안되고, 행사진행비는 실비이므로 제외

산재보험료와 월보수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경비 및 직종별 요율

◆ 경비

- ‘사업소득-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을 경비로 인정
(고용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text{경비} = (\text{사업소득 A} - \text{비과세소득 B}) \times \text{경비공제율}$$

- 관광통역안내사 경비공제율(고용부 고시): **25.6%** (고용보험과 동일)

◆ 산재보험요율(직종별 요율) ※ 사업장(업종별)의 요율 → 직종별 요율로 전환

-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부장관이 고시
-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직종별 요율 **0.6%** + 출퇴근재해 요율 **0.1%** 가산 = **총 0.7%**
-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월보수액 산정에 필요한 경비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산재보험료는 월보수액에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요율(0.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 월 보수액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 (상용형)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소득 증명 서류 첨부)**

◆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재차 제출(신고서식=정정서식)**
-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정정 신고 시 사업주의 정정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착오, 과다 및 과소 신고 한 경우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부담 및 납부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가 각각 ½씩 부담
-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 관광통역안내사의 7월 총 사업소득이 2,300,000원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 경비: $2,300,000 \times 25.6\% = 588,800$ 원
 - 월 보수액: $2,300,000$ 원 - $588,800$ 원 = $1,711,200$ 원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산재보험료: $1,711,200$ 원 $\times 0.7\% = 11,978$ 원 = $11,970$ 원 (원단위 절사)
 -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11,970$ 원 $\div 2 = 5,985$ 원 (원단위 발생 시 미절사)

월 보수액의 소수점 이하, 산재보험료의 원단위는 절사하여 산정하나,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의 원단위는 절사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부담

◆ 사업주·종사자분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24.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적용)

-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
요율의 1/2■ 곱한 금액** ※ '23년의 산재보험료는 **현행 방식대로 부과**

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1,711,200원이고 산재보험요율(출퇴근재해요율 포함) 0.7%

구분	월 보수액 × 요율	산재보험료 (원단위 절사)	사업주·종사자 보험료 부담액
현행	1,711,200원 × 0.7% = 11,978원	11,970원	11,970 ÷ 2 = 5,985원
개정안	사업주	1,711,200원 × 0.35% = 5,989원	5,980원
	종사자	1,711,200원 × 0.35% = 5,989원	5,980원
	합계		11,960원
차액		10원	

2024년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선됩니다.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요율(0.7%)의 절반인 0.3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서식)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장기비속인 () (년 월일)
 [] 산재보험 [] 기타노무제공

제 1차 신고 대상인 노무제공내용을 보고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신고 및 보고한 바를 기록합니다. (별첨)

신고번호	필수	제외번호	필수
제외번호	필수	신고월	필수
직종코드	필수	직종코드	필수
근로일자 및 근로일수	필수	근로일자 및 근로일수	필수
보수총액	필수	보수총액	필수
부과구분	필수	부과구분	필수
부과 구분 사유	필수	부과 구분 사유	필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엑셀 신고 양식)
 * 고용산재 토탈시스템 업로드 방식

보험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월	직종코드	근로일자	근로일수	근로일자	근로일수	보수총액	보수총액	부과구분	부과구분	사유
------	----	--------	-----	------	------	------	------	------	------	------	------	------	----

보험구분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3: 산재 + 고용보험
신고월	노무제공월		
직종코드	해당직종 기재 * ex. 967(관광통역안내사)		
근로일자 및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자 및 한달간 노무제공한 일수		
보수총액	월 보수액		
부과구분	산재보험 '52', 고용보험 '56', 산재+고용 '57'		
부과 구분 사유	노무제공자 '26'		

여러 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신청

◆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

-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재해**를 보호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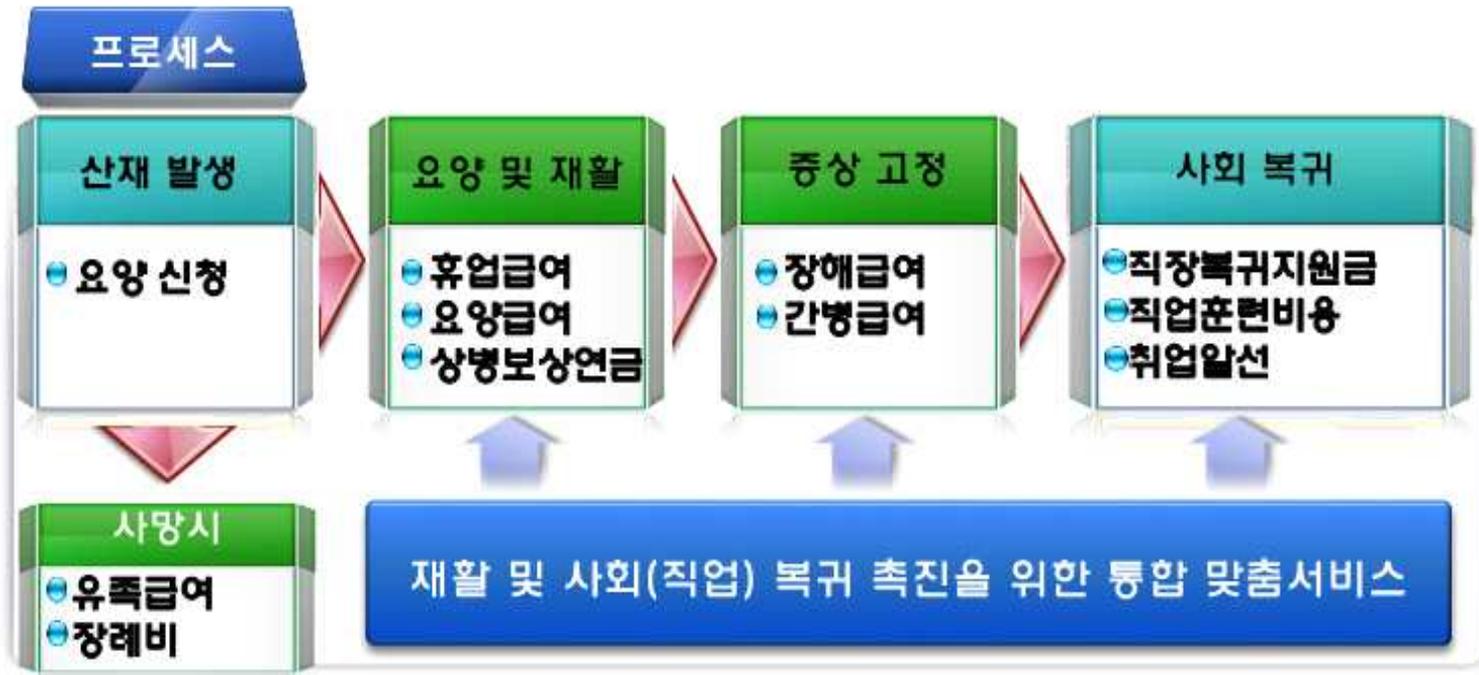
◆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공단 관할 소속기관) ' 23.7.부터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으로 변경
- (신청) **사업주 날인('18.1. 폐지) 없이** 노무제공자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재해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대행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관할에 소속된 소속기관으로 합니다.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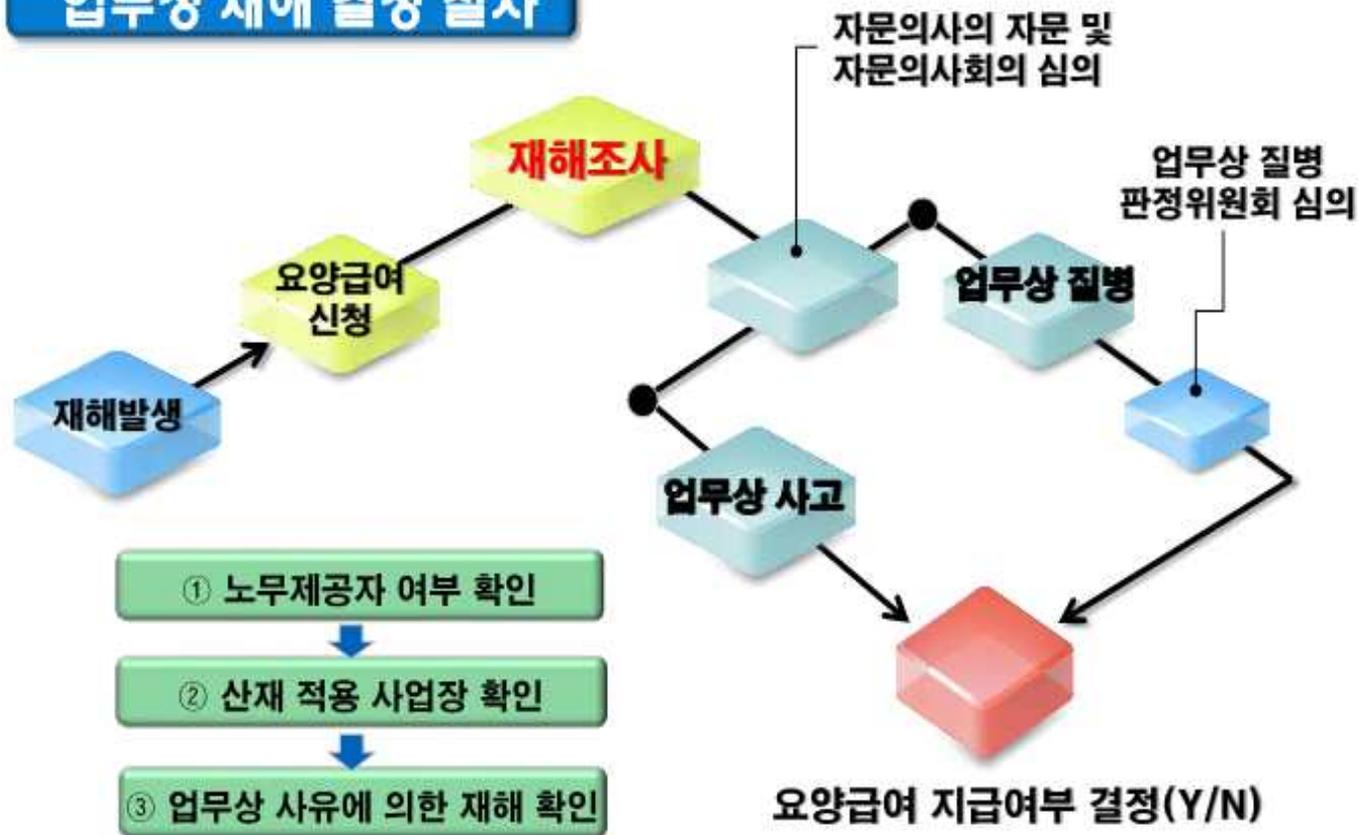
산재보상 프로세스



산재보상 프로세스와 보상범위를 확인합니다.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 결정 절차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산재보험급여

구분	급여의 종류	급여 내용
요양 중	요양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 이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 지급 - 간병료, 이송료(통원 교통비) 등은 재해자에게 지급
	휴업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입·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보수의 70% 를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 경과 시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양 종료 이후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별(1~14급) 해당하는 장해급여 [연금(1~7급) 또는 일시금] 지급 ⇒ 평균보수 × 장해연금(일시금) 일수 ※ 장해연금 일수 138일(7급)~329일(1급), 장해일시금 일수 55일(14급)~1,474일(1급)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재해자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 지급
사망 시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연금(평균보수의 52%~67%) 또는 일시금(평균보수의 1300일분) 지급
	장례비	○ 평균보수의 12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입니다.

4.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평균보수의 산정

◆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평균임금(고용부 고시) → 평균보수(실보수) 개편

-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보수를 산정

- **(평균보수 정의)** 재해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와 임금의 합산)**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 **(평균보수의 산정)**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노무제공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기간에 근무했던 사업장 모두 합산하여 월 평균 보수를 산정합니다.

4.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부장관이 고시**
→ '23.7 ~ '24.12. **1일당 41,150원 (30일 환산 시 1,234,500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 대한 내용을 참고합니다.

<참고>

※ 정부는 계도기간(1년)을 두어 과태료 및 보험급여액의 징수유예

◆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보수액 신고 의무 위반	신고 누락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기타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또는 보험료 체납(50% 초과) 중 재해 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성립신고 전 재해) 또는 10%(체납 중 재해) 징수(납부할 보험료의 5배 상한)
- (연체금) 총 7% 한도 내 부과(납기 후 30일까지 2% 한도 하루 1/1500, 이후 5% 한도 하루 1/6000)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위반행위 시 과태료 및 기타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